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8. 23 선고 2022나44424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희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유

변 론 종 결 2023. 8. 9.

판 결 선 고 2023. 8. 23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7. 선고 2022가단5046899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“이에 대하여 2022. 1. 5.부터”를 “이에 대하여 2022. 1. 25.부터”로 경정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2쪽 다.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다. F은 2022. 3. 18.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,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(이하 ‘이 사건 명령’이라 한다)을 받았으나, 위 신청은 2022. 9. 29. 기각되었다(수원지방법원 2022회합108호, 이하 ‘이 사건 회생절차’라 한다).』

○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인정근거 란에 “갑 제5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 내지 3호증”을 추가한다.

2.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F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중 보증채무 최고액인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正本 송달 다음날인 2022. 1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F에 대한 이 사건 명령이 내려졌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.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,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절차는 기각되었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,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“이에 대하여 2022. 1. 5.부터”를 “이에 대하여 2022. 1. 25.부터1)”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

장용범

판사 권가희, 판사 곽새롬

1)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, 위 지급명령정본이 2022. 1. 24.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위와 같이 경정한다.